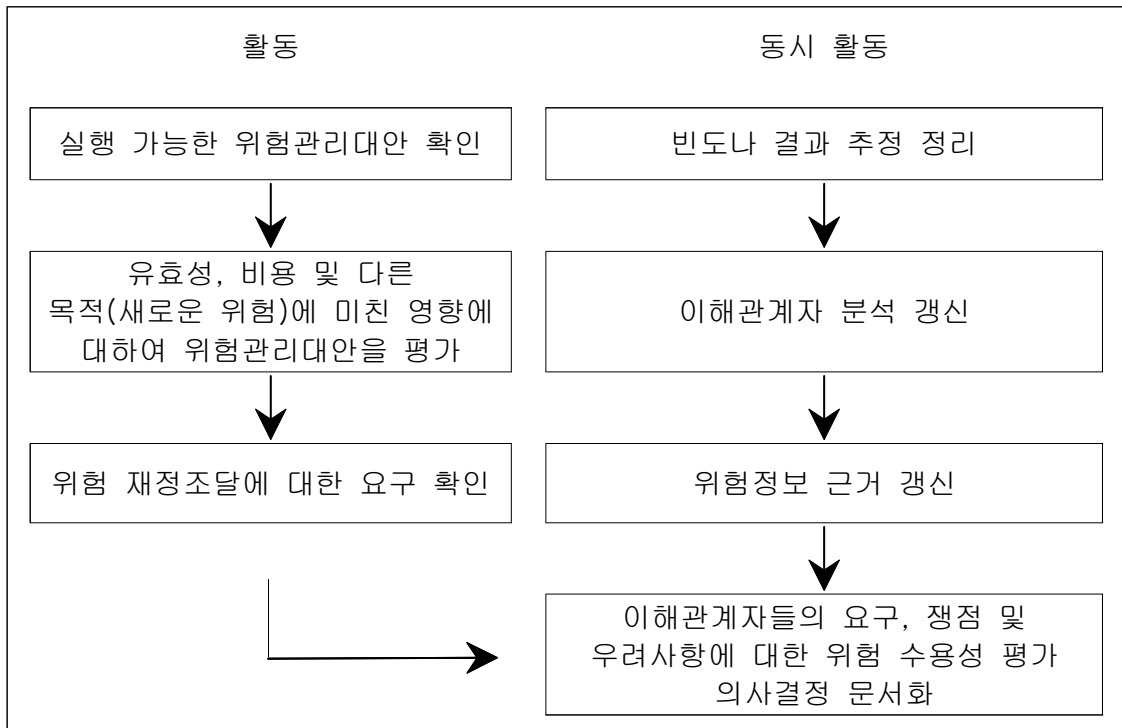


[별표 5] 위험관리(제21조 제5호 관련)



1. 이해관계자들에 의해서 위험이 완전히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위험 관리대안을 마련해야 한다.¹⁾
2. 확인된 다양한 위험관리대안은 위험감소에 대한 유효성, 수행하고 유지하는 비용, 이해관계자들의 다른 목적에 대한 영향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나온 정보들은 의사결정자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제안된 서비스의 종료나 감소에 따른 위험변화가 수용가능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된다. 제안된 대안과 잔여위험에 대한 이해관계자 수용성도 평가대상이 된다.
3. 위험관리단계에서는 다음의 점검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 가. 모든 실행 가능한 위험관리대안이 확인 되었는지 여부
 - 나. 위험감소에 따른 유효성에 대해 위험관리대안이 평가되었는지 여부
 - 다. 이러한 평가들에 대한 가정과 불확실성이 인지되었는지 여부

1) 항공여행과 관련된 위험을 영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위험을 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항공여행을 중단하는 방법뿐이다. 따라서 위험관리란 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이나 합리적으로 이를 수 있는 가능한 낮은 수준(As Low As is Reasonably Achievable ; ALARA)으로 감소되어야 하는 것을 포함한다.